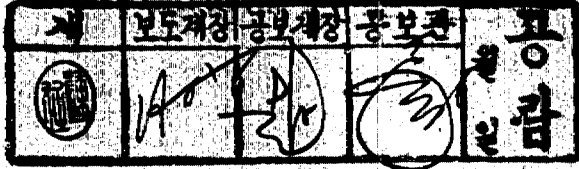


제 1217 호
1985. 11.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근현
편집인 : 공보관 이광우
전화 : 731-6111-3
주소 :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전화 : 735-3337



시보

차 례

- ◎ 조 례
 - 제 2029 호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제 2030 호 :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13
 - ◎ 규 칙
 - 제 2120 호 :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5
 - 제 2121 호 :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5
 - ◎ 훈 령
 - 제 638 호 : 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중개정규정 25
- < 이 면 제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02

◎	고	시	
	제 783 호 :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지적승인	26
	제 78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 도로) 시행허가	27
◎	공	고	
	제 676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	28
	제 677 호 :	지명제(개정)에 관한공고	29
	제 678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준공	30
	제 679 호 :	옹암동 59 의 33-58 의 33 간도로개설공사실시계획공람공고	30
	제 680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31
	제 68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32
	제 682 호 :	울자로 1 가구역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2
	제 683 호 :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	33
	제 684 호 :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	34
	제 685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공사완료	34
	제 690 호 :	K 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34
◎	구	청공고	
	마포구제 20 호 :	상설시장개설허가공고	35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029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 (결격사유)중 "지방공무원법 제 9 조"를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로 한다.

별표 1 의용소방대의기, 별표 3 복제, 별표 3-1 복제 (부너대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도 1 중 (가) 계급장을 별도와 같이 하고 (다) 가슴표장 (라) 지휘장 (마) 깃지를 각각 별도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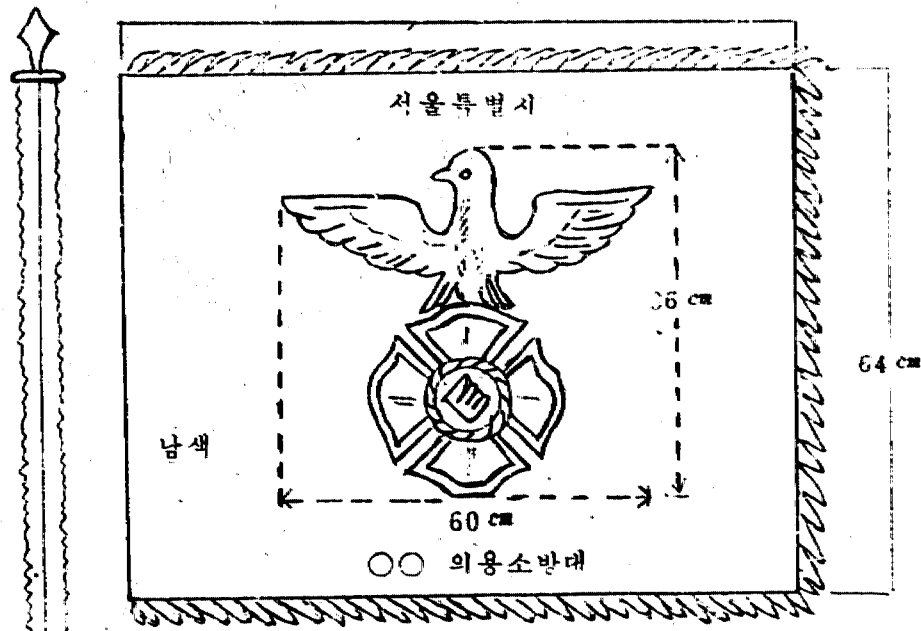
별도 2 중 (나) 모장을 별도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 1)

의 용 소 방 대 의 기 장



(제 식) 1. 깃봉은 은색 도금한 금속재로서 3장 유봉하다. 2. 깃폭은 가로 90cm, 세로 64cm 3. 감은 2중 면직 또는 후랏드지 4. 색: 남 색 5. 휘장: 기 중앙에 의용소방대의 모 장형과 동일한 휘장을 배열한다. (별표 3)		6. 깃: 황색 면사 고연 (1cm) 7. 술: 황색 면선사 고연 (12cm) 8. 깃대길이: 150cm, 흑색칠 9. 대명: 깃면 상부에 자획방 약 8cm 크기의 소속명을 배열한다. 다만, 문자의 간격은 깃면을 중심으로 보기 좋게 배열한다.					
표 지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제 정 장	지질	금색 금속지로 한다.		반장은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가. 반장이상의 것은 소방공무원 간부의 것과 같다. 나. 대원의 것: (별도 1) (가) 제급장 (1) 대원의 것	
	제식	1. 대장의 것 ○ 소방정의 제급장과 같이 한다. 2. 부대장, 지대장의 것 ○ 소방령의 제급장과 같이 한다. 3. 부장의 것 ○ 소방경의 제급장과 같이 한다.		1. 반장의 것 ○ 소방위의 제급장과 같다. 2. 대원의 것 관창에서 방수하는 모양으로 관창은 가로 5mm이고, 방수모양은 마름모형으로 높이 15mm 폭 12mm로 전체높이 20mm 크기로 제작			
장 약 장	지질	정장과 같다. 다만, 작업복용은 작업복 지질에 금색사로 자수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제식	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는 정장의 2분의 1로 한다.					
금 장	지질	금색 금속지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제식	세로 1.2cm, 가로 2.5cm크게 단형으로 우편에 "서울" 좌편에 "의소"의 문자를 횡서로 양각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나) 금 장	
가 슻	지질	녹색지질에 금색사로 자수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제식	의용소방을 상징하는 "불"위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린 도형으로 전체크기는 가로		"		(다) 가슴표장	

표 장	지질	65㎜, 세로 45㎜이며, "불"의 가로 12㎜, 세로 15㎜이고, "비둘기"는 가로 47㎜, 세로 15㎜로 제작하여 왼쪽주머니 상단에 부착		
	제식	십자형 모형으로 가로 52㎜, 세로 53㎜의 크기로 "소방호스"를 표시하는 직경 30㎜, 원안 중심에 가로, 세로 10㎜의 "불"을 표시하고, "북" 밑에 크기 20㎜의 지휘봉을 교차시키며, 중심원 상단 십자형에 가로 20㎜, 세로 10㎜ 크기의 "무궁화"를 표시하여 제작하며, 의용소방대장만 정복 오른쪽 주머니부분에 부착		(타) 지휘장
넷 지	지질	금색 금속지로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 이 한다.	(바) 넷 지
	제식	전체크기는 가로 17㎜, 세로 18㎜크기로 가로 17㎜, 세로 6㎜ 크기의 "비둘기"를 표시하고 그 밑에 가로 17㎜, 세로 10㎜ 크기의 반월형으로 "월계수 잎"을 표시하고, 반원형안에 가로, 세로 5㎜의 "불"을 표시하여 제작		
소 방 모 모	지질	1. 카 바 동모는 흑색 양부지, 하모는 쥐색 양부지 2. 전비와 턱끈은 흑색비니루지 3. 자바라는 흑색 견직지	부장 이상의 것과 같 이 한다.	(별도 2) (가) 정 모 (1) 대 장 (2) 부대장 지대장 (3) 부 자
	제식	1. 모자의 칠정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철사를 넣어 팽팽하게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모자테의 전단부에 턱끈 안 두른다.	

		<p>2. 모자테의 주위의면에는 넓이 4cm의 자바라를 두르고 내면에는 비니루 땀받이를 두른다.</p> <p>3. 모자테의 전반부에는 금색 금속사로 짠 넓이 1.2cm의 띠로 만든 턱끈식 금선을 후반부에는 넓이 1.5cm의 턱끈을 두르고 양끝에 귀단추를 단다.</p> <p>4. 차량은 반월형으로 하되, 부장이상의 것은 표면에 다음 구분에 따라 금색금속사로 자수된 흑색라사지를 입힌다.</p> <p>가. 대장의 것 중안에 햇불 1개 그 좌우에 물방울 모양 각 4개와 월계수 모양의 불꽃 10개를 자수한다.</p> <p>나. 부대장, 지대장의 것 중안에 햇불 1개 그 좌우에 물방울모양 각 4개와 월계수 모양의 불 각 6개를 자수한다.</p> <p>다. 부장의 것 중안에 햇불 1개와 그 좌우에 월계수 모양의 불 각 5개를 자수한다.</p>		
소 방 모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업 방 모	작 지 질	국방색 나이론 직지	부장 이상의 것과 같 이 한다.	(나) 작업모
	제 식	원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 이 한다.	
방 수 모	방 지 질	흑색강화 프라스	부장 이상의 것과 같 이 한다.	(다) 방수모
	제 식	1. 헬멧의 형은 한골형으로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 이 한다.	

		2. 헬멧의 외부도장은 방화페인트로 3회이상 소부한다.		
모 장	지질	바탕은 흑색 라사지이며, 금색사로 자수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라 모 장
	계식	가로 75mm, 세로 25mm의 "비둘기"를 표시하고 그 하단중심에 직경 40mm의 원형모양의 "도끼날" 4개를 표시하되, "도끼날" 사이는 3mm의 간격을 유지하고, 원형 도끼날 중심에 직경 25mm 원형굽기 2mm의 소방호스를 상징토록 표시하며, 그 원중심에 가로, 세로 11mm의 "불"을 표시하고, "불"주위에 사방으로 "물"이 방수하는 모양으로 표시하여 제작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약 장	지질	정장과 같이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계식	모양은 정장과 동일하나 3분의 2크기로 제작하여 작업모에 부착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 부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정 의 부	지질	동복은 흑감색 모구렛바 또는 낭복지, 하복은 쥐색모포라 또는 양복지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별도3) 계 부 (가) 동정복 상의 (1) 부장이상 (2) 반장이상 (나) 하정복 상의 (1) 전 면 (2) 후 면
	계식	1. 벌림깃에 전면, 중앙에 한줄 4개의 단추를 단다. 2. 등판은 중앙경합선 하단을 절개한다. 3. 흉부와 복부 각 좌우에 동복은 속붙임 하복은 겉붙임의 두 경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4.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 단추를 단다. 5. 하복은 뒤허리 부분에 넓이 5센치미터의 띠를 붙인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만, 동복은 짙은깃으로 하고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지질	상의와 같이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구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정	하	제식	1. 긴바지로 한다.			부장이상과 같이한다.					
			2. 전면 우측에 옆으로 속 붙임 작은주머니와 좌우측 면에 각각 길기로 속붙임 주머니를 1개씩을 붙인다.								
부	의	제식	3. 후면좌우에 각각 옆으로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지질	국방색 목 면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 (다) 작업복 이 한다. (1)상의				
작	상	제식	1. 노타이식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후면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					
			2. 긴소매로 하고, 흉부좌우에 겹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업	의	제식	3. 노타이식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후면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하	지질	상의와 같이 한다.			"			
부	의	제식		집복의 하의와 같이 한다. 좌우와 후면좌우에 겹붙임 주머니를 붙인다.			(2)하의 ㉠전면 ㉡후면				
		방	방	제식	1. 깃은 흰색 면포지 (이면에 방수 처리한것)						
수	수				제식	1. 깃은 흰색 면포지 (이면에 방수 처리한것)			(라) 방수복 (1)전면 (2)후면		
		부	복	제식		2. 2.5cm 띄우도록 한다.					
3. 소매길이는 손목관절로부터 3cm 길게 한다.											
			4. 팔메지 격음깃에 흉부 및 배부에 방수고무지를 덧붙이고 전면좌우에 겹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인다.								
			5. 소매끝 내부에 약 10cm 모직 소매 솜털을 붙인다.								
			6. 전면에 고무 단추 5개를 한줄로 단다.								

비 고								
1. 정복 상의의 전면 중앙단추의 배열간격은 척하단 단추가 허리디 박클 하부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 배열한다. 2. 단추는 다음표에 의한 단추를 사용한다.								
구 분	소 방 단 추			플 단 추		비 고		
	대	중	소	중	소			
정 복		0				상 의		
작 업				0				
주머니 단추 (정복)			0					
견 장 단 추			0					
모 자 단 추			0					
상 의 단 추				0				
소 방 화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방 수 화	단 화	지질	흑색 복수지 (피혁)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별도 4) (가) 소방화 (1) 단 화 (2) 방수화	
		제식	무장식 단화로 한다.					
	방 수 화	지질	천연 및 합성고무 또는 이의 혼합물			"		
		제식	1. 길이는 약 8.5cm로 대퇴부까지 올라오게 하고 2. 바닥속은 철판을 넣으며 3. 상부로부터 약 50cm는 매리야스에 고무틀 입힌 고무판을 안으로 붙인다. 4. 상단의측에 요대에 연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의 고리끈을 단다.					
		기동화	지질	흑색피혁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지식	남자 소방공무원 기동화와 같다.					
부 속 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부 속 물	단 추	지질	니켈금속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별도 5) (가) 부속물 (1) 단 추	
		제식	1. 직경 22mm (소형 16mm), 높이 4mm (소형 3mm), 반구형으로 가장자리 높이를 1mm의 로프형으로					

부속	베타이핀	<p>하고 그안에 직경 12mm (소형 8mm)로 "셋블"을 양각한다.</p> <p>2. 저면의 중앙에 직경 2.5mm (소형 2mm)의 코리를 단다.</p>		
	지질	<p>1. 동부용은 흑색, 하부용은 취색 모직지</p> <p>2. 베타이핀은 니켈도금한 금속지</p>	해당 없음	(2) 베타이핀
물	허리띠	<p>1. 박클은 니켈 금속지</p> <p>2. 띠는 동부용은 흑색, 하부용은 취색목면지</p>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3) 허리띠 (박클)
	지질	<p>1. 박클</p> <p>세로 37mm, 가로 53mm 니켈 박클로 중앙에 한면이 12mm 대각선이 15mm의 "셋블"을 양각한다.</p> <p>2. 허리띠</p> <p>너비 32mm, 두께 4mm 적당한 길이로 하고, 끝에 15mm 절편을 안밖으로 붙인다.</p>	"	

(별표 3의 1) 부속 제 (부녀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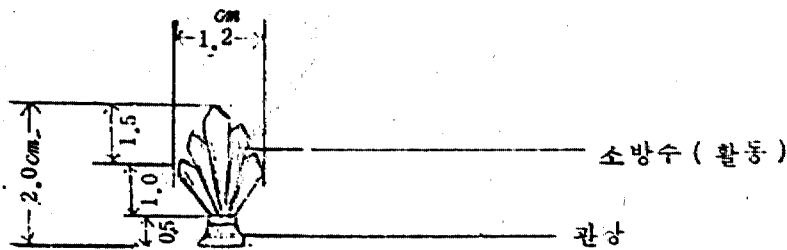
구분	부장 이상	반장 이하	도형
표지	<p>지질 남자 의용소방대원의 제급장과 같이한다.</p> <p>제식</p>	<p>남자 의용소방대원의 제급장과 같이한다.</p>	남자 의용소방대원의 제급장과 같이한다.
	<p>지질 남자 의용소방대원과 같이한다.</p> <p>제식</p>	<p>부장 이상과 같이 한다.</p>	
장지	<p>지질 남자 의용소방대원과 같이한다.</p> <p>제식</p>		
	<p>지질 남자 의용소방대원과 같이한다.</p> <p>제식</p>	<p>부장 이상과 같이한다.</p>	

구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수업모	착용모	지질	남자대원과 같이한다.			부장이상과 같이한다.				
		제식	"			"				
모장	약장	지질	"			"				
		제식	"			"				
제복	착용복	지질	여자 소방관과 같이한다.			"				
		제식	"			"				
소방화	기동화	지질	흑 색 피혁			"			〈별도 4〉 (4)여자기동화	
		제식	구두끝이 있는 보통 단화 형식으로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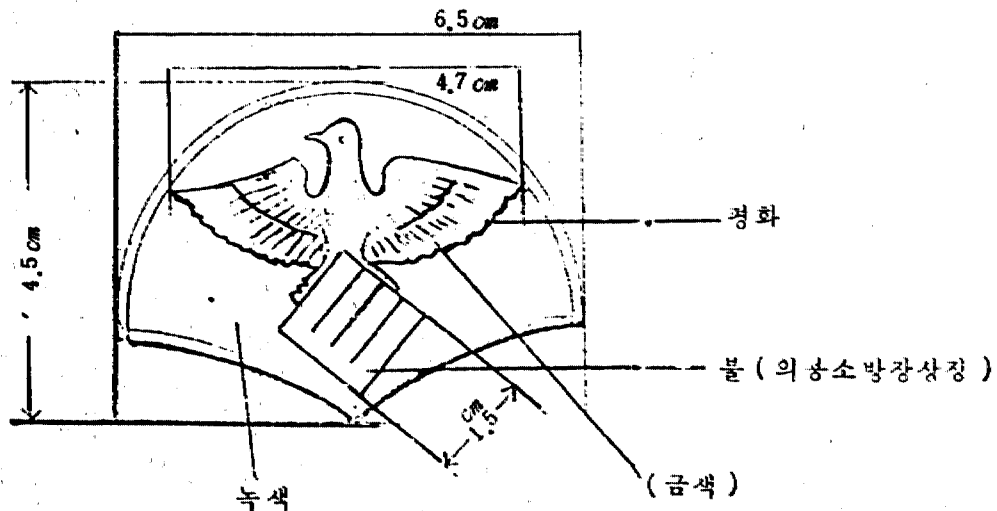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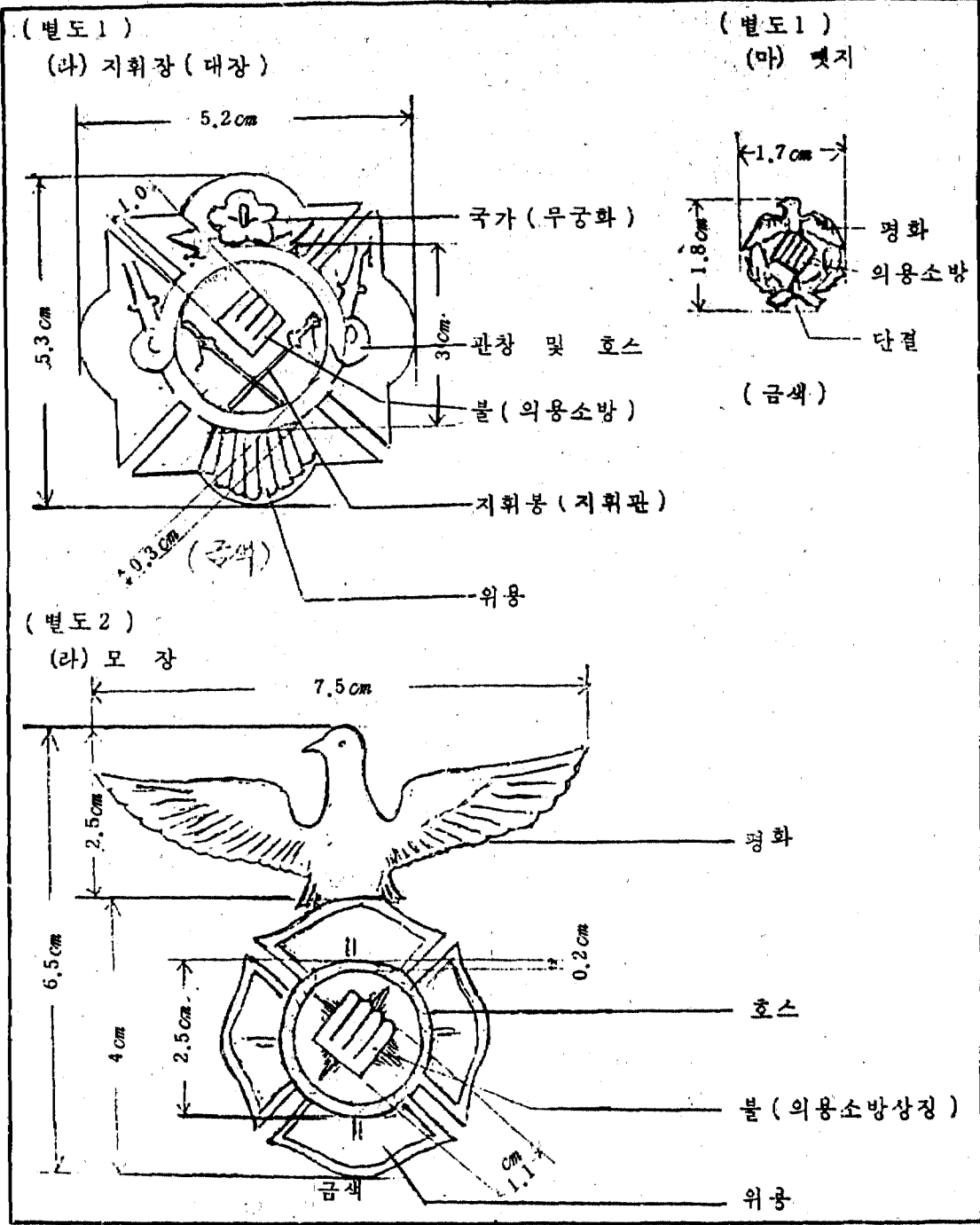
(별도 1)

(가) 계급장 (대원)



(다) 가슴표창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198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2030 호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 17 조 제 1 항중 “오물(분뇨 및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와”를
“오물(분뇨 및 쓰레기)의 수집·운반과”로 한다.

제 18 조 내지 제 22 조중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로 한다.

제 2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법 제 11 조 및 조례 제 7 조
에 규정된 오물처리업 허가 및 법
제 13 조에 규정된 오물처리업 허
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체의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
장에게 위임한다(오수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및 취
소등은 제외한다) 이들업체에 대
한 변경허가 및 지도감독과 후회
업 신고의 수리도 또한 같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조례는 1985. 11.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납된 오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치 의한다.

별표 2 오물의 수집·운반수수료 종별 부과기준

구분	종별	등급	부과기준 (연면적)	월부과금액 (수집·운반비)	비 고
쓰 레 기	일 반 오 물	초과	165㎡ 이상, 매 33㎡까지	500원가산	
		1	165㎡ 미만	1,700원	
		2	132㎡	1,500 "	
		3	99㎡	1,300 "	
		4	66㎡	1,000 "	
		5	49.5㎡	700 "	
6	33㎡	130 "			

종 별	기	간	남 부 기 간	고 지 서 발 부 기 간
영 업 오 물	1기 (11.1- 1.31)		2.16 - 2월말	2.1 - 2.15
	2기 (2.1- 4.30)		5.16 - 5.31	5.1 - 5.15
	3기 (5.1- 7.31)		8.16 - 8.31	8.1 - 8.15
	4기 (8.1-10.31)		11.16-11.30	11.1-11.15
다 량 오 물	매	월	익월 16 -말일	익월 1-15인

규 칙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겸 보 현
198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2120 호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시
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조를 삭제하고 제 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조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의 조

정대상) 구청장은 별지 제 22호 서
식의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조정
대장을 가옥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건물에 수개의 영업장
이 있을 때에는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 18조 제 1항 및 제 19조 제 1항중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를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로 하
고 제 19조제 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 20조제 1항중 “(처리수수료는 제외
한다)”를 삭제하고, 제 21조제 1항중 “쓰
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 결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25호서식 및 제
27호서식(세입자)을 “쓰레기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조정결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25호 서식”으로 한다.

제 22조 내지 제 24조, 제 26조 제 1항 제 4호
제 5호중 “및 처리”를 삭제한다.

제 22조 제 3항, 제 4항, 제 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 은행에서 수납한 수수료는 각 은행 본점에서 이를 수합하여 익일 시금고에 통보하고 시금고는 소관별 납입필 통지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4) 제 3 항의 납입필 통지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수납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납입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부에 청색의 수납소인 및 적색의 체납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22 조의 1,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2 조의 1 (독촉장 발부등) 1)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가산금의 납부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기 경과후 7일 이내 10일의 납기한을 명시하여, 별지 제 27 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가산금 조정결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 23 호 서식에 의한 조정명세서를 사용한다.

3) 구청장은 월 1 회 이상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의 체납건수 및 금액을 대조 확인하고 체납자를 납부 돈려하여야 한다.

제 22 호 내지 제 27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제 33 호 및 제 34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지정, 승인 및 등록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식제 22 호)

(구 동)

관 리 번 호	
주 소	동 번 지 호 (동 반)
건 물 소 유 주 명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조정대장

최초작성일자: 년 월 일

종 별 내 역	계	일 반	공 동	영 업	다 량
	진 수	평	진 수	평	진 수

일 반					공 동					영 업					다 량							
변동 일자	성 명	건물또는사용면적	조정 등급	변동사유및근거	변동 일자	성 명	건물또는사용면적	조정 등급	변동사유및근거	변동 일자	상 호	성 명	사용 평수	조정 등급	변동 사유	변동 일자	상 호	성 명	사용 평수	월평균 배출량	변동 사유	

※ 작성요령
 1. 건물단위로 1매작성
 2. 종별평수합계 = 재산세수납부 및 실측평수
 3. 최초 작성일 이후 변동사항 기재
 가. 부과종별변동: 업종, 배출량 증감시
 나. 조정등급변동: 법령개정, 사용평수증감시
 다. 기타 변경: 사용평수 소유자변동

시식규격: 12권가보

1910

제 1217 호 시 보 1985.11.18 37-17

37-18

제 1217 호 시

보

1985.11.18

(서식제 22-1 호)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미부과대장

번호	종별	성명	주소	사유	비고

(서식제 23호)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조정명세서

년 계 기분

번호	종별	등급	수거량 (다량)	수 수 료			수납소인 또는은행 납부일자	납세의무자	
				조정액	가산금	계		주 소	성 명

서식규격 : 16철지 세로

(서 식 제 24 호)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조정결의서

조정일자 :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년 월(기분)
 ○ 조정액 총괄

종 별	건 수	금 액	수 거 량(톤)	비 고
계				
일 반				
공 동				
영 업				
다 량				

○ 조정 제외 건수

합 계	대 행 수 거	자 가 수 거 처	면 제					
			계	1 항	2 항	3 항	4 항	

첨부 : 종별 등급별 조정내역
 조정명세서 (제 23 호
 서식)

결 재	담 당	계장 (사무장)	파장 (동장)

서식규격 : 16 절지세로

1912

<p>〈별지제 25호서식〉</p> <p>수납은행 보관용 납입고지(납입봉지)서</p>					<p>세입 징수관용 영수필통지서</p>					<p>영수증</p>				
과목: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과목: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과목: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년도	월	기분	수납부 일련번호	종 별	년도	월	기분	수납부 일련번호	종 별	년도	월	기분	수납부 일련번호	종 별
				일반, 공동주택, 영업, 다량					일반, 공동주택, 영업, 다량					일반, 공동주택, 영업, 다량
주소또는 상호					주소또는 상호					주소또는 상호				
성명		납부기한		년월일	성명		납부기한		년월일	성명		납부기한		년월일
납기내 액		납기후금액			납기내 액		납기후금액			납기내 액		납기후금액		
<p>납부장소: 시내공과금수납대리은행 본지점</p> <p>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구 칭 장 인</p>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봉 지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공고 인 구 신 장 키라</p>					<p>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년 월 일</p> <p>은행</p>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제 1217 호 시

표 1985.11.18 37-21

(서식제 27호)					독 속 장 ○					영수필동지서 ○					영수증 ○				
과목: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					과목: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					과목: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									
년도	월	기분	동번호	채납부 일련번호	년도	월	기분	동번호	채납부 일련번호	년도	월	기분	동번호	채납부 일련번호					
주소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주소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주소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성명 또는 상호					성명 또는 상호					성명 또는 상호									
종별	납기내		가산금	계	종별	납기내		가산	계	종별	납기내		가산금	계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만원백십원					
일반					일반					일반									
공동					공동					공동									
영업					영업					영업									
다량					다량					다량									
계					계					계									
위의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시내 각은행본지점, 우체국 납부기한: 19 . . . 까지 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경에 는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제징 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 류처분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구 청 장</div>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봉보합 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수납일부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금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구 청 장 귀하</div>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수납일부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은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취급자인</div> </div>									
(수납은행 보관용)					(구청수납동보용)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서식규격: 16절지가로									

37-22 제 1217호 시 1985.11.18

※ 은행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서식제 33 호)		<u>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조정보고</u>				보 고 기 일											
						조정절의일로부터 5일이내											
년	월(기)분	구분	직영·민영														
○ 조정액 총괄						구(동)											
구분	본월분		가산금	계		수거량 (톤)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						x											
공동						x											
영업						x											
다량																	
계																	
○ 등급별 조정내역																	
종별	등급별	계		초과		1		2		3		4		5		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																	
공동																	
영업																	
○ 조정 제외건수																	
합계	대행수거	자기수거처	면				계										
			계	1항	2항	3항	4항	계	1항	2항	3항	4항					

서식규격 : 8절지세로

< 서식규격제 34 호 >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과징실적보고서 (월분)

주소 : 31820-
 수신 : 서울특별시청
 참조 : 청소과장

보고기일	
직영	매월 10 일
민영	" 5 "

구청장(동장)인

구분 종별	전월까지누계								조 정				징 수				금월까지누계								정 수 율 (%)
	조정		징수		결손		채납		금초	월정	가산	제	금월징수		계	조정		징수		결손		채납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진수	금액		
일 반																									
공 동																									
염 업																									
다 량																									
계																									
과 년 도																									
합 계																									

서식규격 8절지가로

37-24

제 1217 호

본

1985.11.18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채조례 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11.18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21 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2 항중 권중별로 “가”를 “다”
로 “나”를 “라”로 “다”를 “마”
로 “라”를 “바”로 “마”를 “사”
로 한다.

제 4 조 1 항중 “구청 및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은 “구청
장”으로 한다. 1 호서식(상수도공채
원부)중 “8%”를 “6%”로 하
며 “권면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한다.

6 호서식(상수도공채 매출 및 상환
보고서)중 “권면금액”을 “액면금
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
심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5.11.18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서울특별시훈령제 638 호

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
심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
험연구소(이하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보건환
경연구소(이하 “보건환경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제 3 조제 1 항중 종합기술시험 연구
소장을 보건환경연구소장으로 하며,
동조 제 2 항중 “위원장은 회의시마
다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이 되고 위
원은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관리부장
및 소속연구관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를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소장이 되
고 위원은 위생화학부장, 공해미생물
부장, 서무과장 및 회의시마다 소속

연구관중 1 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로 한다.

동조제 5 항중 “ 간사는 종합기술시
험연구소 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무계장이 된다 ” 를 간사는 보건환
경연구소 사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이 된다고 한다.

제 6 조중 “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 ”
을 “ 보건환경연구소장 ” 으로 하고,
별지 제 1, 2, 3 호 서식중 “ 서울
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인) ” 을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장(인) ” 으
로 한다.

제 8 조중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 정 자 · 확 인 자

구분	평정대상	소 장	부 장	과 장	연 구 사
평 정 자		보건사회국장	소 장	부 장	과 장
확 인 자		부 시 장	부 시 장	소 장	부 장

*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783 호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17 호 ('85. 10.25)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
정에 의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에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11.18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	연구시설	강서구가양동 1190 외 2 필	40,030 ㎡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78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624호 (85.9.21)와 동 고시 제 658호 (85.10.2)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시계획시설 (학교)과, 동고시 제 2호 (74.1.14)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동 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11. 1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학교 - 강서구신정동산 109-1 일대
도로 - 강서구신정동 724-726 간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

사업및명칭 : 명신고등학교와 진입도로

다. 사업의 규모 :

학교 - 대지 : 변경전 - 10,512㎡
 변경후 - 12,663㎡
 건물 : 변경전 - 3,336㎡
 변경후 - 7,915.97㎡

도로 - B = 6 m, L = 81.5 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강서구신정동산 109-1
학교법인 명신학원 이사장 정금순

마. 사업시행기간 : 85.11.19 - 87.11.30

바. 공사설계도서 :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조서 :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조서

1. 학교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신정동	산109-1	입	13,884	10,512	학교법인 명신학원	없 음
"	산108-2	입	2,579	2,151	강남구 양재동 9-66 정금순	없 음
계			16,463	12,663		

2. 도 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신정동	726-2	답	1,781	73	서울특별시	없 음
"	724	전	1,441	188	강서구 신정동 724 김갑현	경기도부천시소사동 98.브릭19-3 노트 (10통4반)유봉
"	725	답	3,440	326	도봉구 우이동 90-5 최영익	서울특별시
계			6,662	58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공 고</div> <p>◎ 서울특별시공고제 676 호</p> <p>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의 규</p>	<p>점에 의거 아래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5. 11. 1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p>
---	---

지정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강 동 제 5 호	중앙설비	암 사 동 501-16	박홍서	기술요원 미확보, 무단 전출	지 정 취 소
제 83 호	동우설비	성 내 동 245-32	안창진	무 단 전 출	"
제 116 호	성재설비	거 여 동 202-135	이상구	재개신고미이행, 사무 실면적 미달	"
제 194 호	남일설비	암 사 동 497-14	권춘오	시공업지정전 시공	"

<p>◎ 서울특별시공고제 67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지명제(개)정에 관한 공고</p> <p>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제 1 차회의</p>	<p>(85.10.10)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명을 재(개)정하였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5. 11. 1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p>
--	---

시설구분	현재지명	위 치	면적(㎡)	재 (개) 정	비 고
자연공원	북한산공원	종로구구기동	1,667,848	구기동 : 새검정자연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지정후 잔여지역을 세분하여 지명제정
		평창동		평창동 : 비봉자연공원	
		성북구정릉동	411,754	정릉자연공원	
		은평구녹번동	749,397	독바위 자연공원	
		불광동			
		서대문구홍은동	819,429		
" "	용마공원	동대문구망우동	2,640,600	용마산공원	구제에 따라 구분
		면목동			
		성동구구의동	2,493,833	아차산공원	
		중곡동			
		광장동			
" "	인능산1공원	강남구내곡동	1,416,900	신원자연공원	
		신원동			
" "	인능산2공원	강남구내곡동	775,271	내곡자연공원	
" "	인능산3공원	강남구새곡동	381,162	새곡자연공원	
		내곡동			
근린공원	(신설)	동작구신대방동	260,737	보라매공원	
		400			
		(공사이적지)			
유원지	천호유원지	강동구암사동	282,000	광나루유원지	
" "	백운유원지	도봉구상계동	161,245	수락산유원지	
광 장	신 설	종로구훈정동	42,045	종묘앞 공원	
	(종묘광장 조성지)	100 일대			

시설구분	현재지명	위치	면적 (㎡)	제 (개) 정	비 고
광 장	여의도광장	영등포구여의도동	378,000	여의도광장	여의도광장, 5.16 광장등으로 혼용해온 것을 통일

◎ 서울특별시공고제 678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준공

1. 서울특별시 고시제 716 호 (84.12.1) 로 시설결정되고 동고시 제 779 호 (84.12.24) 로 지적승인 되었으며, 동고시 제 114 호 (85.2.23) 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된 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동법 제 8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11. 1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종로구종로 6가 279-2, 281-2, 283-3, 289-15, 57.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명칭 : 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다. 준공내역 : 종로 6가 279-2, 281-2, 283-3, 289-15, 57 (면적: 2,193.1)

라. 시행자성명 : 동대문종합시장(주)
대표이사 정 승 소
주소 : 종로구종로 6가 289-3

◎ 서울특별시공고제 679 호

응암동 59 의 33-58 의 33 간도로
개설공사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시고시 제 3 호 (69.1.18) 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은평구 응암동 59 의 33-58 의 33 간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이해관계인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미수령자에 한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5. 11. 18

서울특별시장

<p>공 략 개 요</p> <p>가. 사업시행지 : 은평구 응암동 59의 33-58의 33 간</p> <p>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개설 응암동 59의 33-58의 33 간 도로개설</p> <p>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 : B = 8 L = 50 A = 4.0 하수도 D = 450% × 50</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은평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에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즉시 (85.11) 2) 준공예정일 : 85.12.31</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 별첨</p> <p>사.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	--

토 지 조 서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은평구 응암동	59-33	대	404	59-55	대	235	59-33	유 영 택

<p>◎ 서울특별시공고제 680 호</p> <p>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시행에 따른 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5 호 (84.7.26)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시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신월동 550-1 화곡교통주식회사에 각</p>	<p>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내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1985. 11. 18 서울특별시청</p> <p>공 략 개 요</p> <p>1. 사업시행지위치 : 강서구신월동 545-3 6 호 (4 필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화곡교통주식회사</p> <p>3. 규 모 : 대지 2,159.5㎡ 건물 :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930㎡</p>
--	---

4. 사업시행허가 신청자 : 화곡교통주식회사

5. 사업기간 : 84.7 - 86.7.25

◎ 서울특별시공고제 68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8 호 (85.3.27) 및 동고시 제 249 호 (85.4.12)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내발산동 715 학교법인 홍신학원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람.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1985. 11. 18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내발산동산48-3

일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화곡중, 고등학교

다. 규 모 : 대지 13,506 ㎡

라.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홍신학원

마. 사업기간 : 85.11-86.12.15

◎ 서울특별시공고제 682 호

울지로 1 가구역 제 2 지구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74 호 (84.8.10) 호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울지로 1 가구역 제 2 지구에 대하여 시행자인 부림홍산(주) 대표 송관용이 도시재개발법제 14 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법제 2 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하였는바, 동법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동 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1985. 11. 18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재개발사업의명칭	을지로1가구역제2지구 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시 행 구 역	중구을지로1가7-1번지 일대			·		
3)시 행 면 적	2,038.7 ㎡			·		
4)시 행 자	부림홍산(주) 대표 송관용			코오롱건설(주) 대표 석학진, 부림홍산(주) 대표 송관용		
5)주요사무소의소재지	중구 을지로1가 32			강남구 역삼동 648		
6)시 행 기 간	84.8.10 - 87.7.31			변경없음		
7)건 축 계 획						
○ 대지면적	1,936.5 ㎡			변경없음		
○ 건 배 율	45%			45%		
○ 용 적 율	509.1%			507.4%		
○ 층 수	지상 12층, 지하 4층			변경없음		
○ 주 용 도	업무 및 판매시설			·		
8) 공람기간 : 85.11.19 - 85.12.18						
9)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p>◎ 서울특별시공고제 683 호</p> <p>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p> <p>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 50조 제2항 제 2호</p>				<p>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면허 영업 정지 처분을 하였기 공고한다.</p> <p>1985. 11. 18</p> <p>서울특별시장</p>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 유	처 분 사 항	근거법규
토공 (82-02-218)	대창건설(주)	이 호 근	종로구당주동 19	도급한도액 초과	영업정지 6개월 (85.11.3 - 86. 4.2)	건설업법 50조 2항 2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684 호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
 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 50 조 제 2 항 제 2 호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면허 영업 정지 처분을 하였기 공고한다.

1985. 11. 18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 유	처분사항	근거법규
토공 (02-45)	청신건설 (주)	이상봉	영등포구신길동 100-22	도급한도액초과	영업정지 6개월 (85.11.3-86.4.2)	건설업법 제 50 조 2 항 2 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685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5 호 ('85. 7. 25) 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된 마포구 노고산동 57-1, 2, 3 호 소매시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법 제 85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11. 19
 서울특별시장

아 래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1, 2, 3 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소매시장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1,607.7㎡, 건축면적 800.8㎡, 연건평 11,971.4㎡

라.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1 호
 (주) 크리스탈백화점 (구 : 크리스탈쇼핑(주))
 대표이사 이 중 음

마.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착 공 일 : 1985. 7. 30
- 준공예정일 : 1985. 12. 31
- 준 공 일 : 1985. 11. 18

◎ 서울특별시공고제 690 호
KS 표시 정지 처분 해제 공고

1985. 8. 16 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476 호) 및 1985. 8. 17 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408 호) 로 KS 표시 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33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5. 11. 19
 서울특별시장

업 체 명	한일소속기공(주)	태양금속공업(주)
대 표 자	김 봉 태	한 은 영
소 재 지	서울구로구구로동 614-53	서울강동구풍납동 340
규 격 번 호	KSB 5301	KSB 1023
규 격 명	접선류억차형 13 ■ 수도미터	+자홈, 작은나사
종 류 등 급	MD 13	바인딩작은나사
해 제 일 자	'85.11.16.	'85.11.17.

구 청 공 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 20 호

상설시장개설허가공고

시장법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설시장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하였기 동법제 20 조제 2 항제 1 호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5.11.19.

마 포 구 청 장

1. 허가일자: 1985. 11. 19.
2. 개설자: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
3. 개설자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 노고산동 57 번지 1 호
4. 대표자: 이 중 응
5. 시장위치: 서울특별시마포구노고산동 57 번지 1, 2, 3 호 지하 2 층, 지상 7 층, 7,849.63 ㎡
6. 명 칭: 크리스탈 백화점
7. 허가내용: 백화점 (상설시장)

사 령

© 1985.11.16 .

령제 42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여인학	보건환경 연구소	공해측정 장비관리요원	지방별정직 6급상당	보건환경 연구소	공해측정기사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상열	"	공해측정기사	지방별정직 7급상당	"	"	지방별정직 8급상당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김길식	보건환경 연구소	공해측정 기사	지방행정직 7급상당	보건환경 연구소	공해측정기사	지방별정직 8급상당
임귀철	"	"	"	"	"	"
김영광	"	"	"	"	"	"
한선규	"	"	"	"	공해측정 장비관리요원	"
장봉훈	"	"	"	"	공해측정기사	"
◎ 1985년 11월 16일						령제 42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유윤호	자동차관리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85.11.16 - '85.12.31)			관악구수도관리과	지방행정서기	
◎ 1985년 11월 18일						령제 42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진식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84 구 1090 '85.10.15) 에 의거 '84.6.16 자 "견책"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구로구 시민봉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명제 427 호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김영남	내무국 새마을지도과			도봉구 수도관리과	지방행정주사	
권대경	강남구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	
윤선중	강남구 ('85.11.18 - '86.3.18)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 1985년 11월 20일		령계 429호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이형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소방본부 본부장	지방소방정감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감 안병찬 소방감에 임함. 소방학교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장 소방학교교장 임병욱 소방정감 임병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에 보함. 대 통 령	